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

2022. 12.

철 도 국  
( 철 도 건 설 과 )

# I. 일반사항

## 1.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 나.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용역참여업체가 작성·제출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기술제안서'(통합평가 시 종합기술제안서)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 설계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 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부실별점,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항목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소수점 넷째자리로 계산한다. 소수점 처리는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별 등 모든 계산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바. 평가항목 중 정량적 항목은 절대평가, 정성적 항목은 상대평가로 시행한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 발주 주관부서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항목은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위원별 업체차등점수제(1순위 업체 평가점수에 순위별로 배점의 -5%씩 차등)를 적용 후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평가항목 자료의 미제출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 사. 2단계 평가방식(기술적이행능력 + 종합기술제안서)으로 용역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기술적이행능력 상위 5개 이하 업체로 선정한다.
- 아.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심사는 발주청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진행하고,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2차심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다.(정량평가는 내부직원이 평가)

자. 정성적 평가항목(인터뷰 평가항목 포함)의 등급별 적용계수는 다음표와 같다.

1). 등급별 적용계수

등 급	S(탁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적용계수	1.0	0.9	0.8	0.7	0.6

2).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 배분

업 체 수	등 급				
	S(탁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1	2	1
7	1	1	2	2	1
8	1	1	2	2	2
9	1	1	2	3	2
10	1	1	3	3	2

차. 종합기술제안서의 최종평가 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바'항목에서 산출된 정량적 항목(감점항목 포함)과 정성적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
- 2). 합산된 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①→②→③)를 선정  
 (①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우선순위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등수를 결정, ②정성평가 우선순위 항목도 모두 동일할 경우 정량평가 우선순위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등수를 결정, ③모두 동일할 경우 업체의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  
 \* 정성 및 정량 평가항목 우선순위 : 배점이 큰 항목을 우선순위로 함
- 3). 1순위 업체의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
- 4). 2순위 이하 업체 총점차등을 적용한다  
 (1순위 업체의 최종 평가점수에 전체 배점의 1.5%를 차감하여 산정)

구 분	A사	B사	C사
1. 정량적 항목 점수	30.0	29.0	28.0
2. 정성적 항목 점수	66.1667	62.8417	59.5167
총점(1+2)	96.1667	91.8417	87.5167
순 위	1	2	3
총점차등 최종점수(1.5%)	96.1667	94.6667	93.1667

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성평가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타.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선임평가위원 포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선임평가위원이 최종 결정한다.
- 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평가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핵심기술자 인터뷰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중 전문가역량평가 점수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 2.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가. 제출방법 및 장소 : 우리 부 해당부서(철도건설과)에 문서로 제출한다.
- 나. 제출부수 : 15부(원본 1부, 부분 14부)
- 다. 참여업체는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리인은 업체대표의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 라. 2단계 평가 시 1차 심사 후 선정된 평가적격자는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과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업체대표의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 3. 기타사항

-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나. 서식 작성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다.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자료 중 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은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한다.
-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바. 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 핵심전문가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아. 평가자료에 사용되는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 평가자료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 아트지(간지는 색상지로 할 수 있음),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좌철 한다.
- 차. 입찰 참여사는 기술적 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카. 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의 배포 또는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안내” 게시로 갈음한다.

## II.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 1.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

#### 가.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관리역량	계	20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	정성적 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5	정성적 평가	
	신용도	계	10	
		재정상태 건실도	3	정량적 평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7	정량적 평가		
기술역량	계	50		
	과업에 대한 전문성	15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5	정성적 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30		
	양적평가(주관사+공동참여사)	15	정량적 평가	
	질적평가(주관사+공동참여사)	15	정성적 평가	
계약신뢰도	평가서 작성위반	최대-5	정량적 평가	
	평가의 공정성·적성성 저해우려사항		정량적 평가	

#### 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보유	계	10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점수	10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방법	계	25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5	정성적 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8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2	정성적 평가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계	10		
	작업계획	5	정성적 평가	
	직원투입계획(집중참여도)	5	정량적 평가	
전문가 역량	계	55 (55)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25 (25)	정량적 평가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20 (15)	정성적 평가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0 (10)	정성적 평가
인터뷰 평가		- (5)	정성적 평가	
사회적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2	정량적 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2	정량적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성성 저해우려사항	최대-10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위반		정량적 평가	

※ 평가기준 중 ( ) 점수는 인터뷰 평가 시 배점

## 2.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관리역량	계	2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0.5	정성적 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0.5	정성적 평가	
	신용도	계	1.0	
		재정상태 건설도	0.3	정량적 평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0.7	정량적 평가	
기술역량	계	5		
	과업에 대한 전문성	1.5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5	정성적 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3		
	양적평가(주관사+공동참여사)	1.5	정량적 평가	
	질적평가(주관사+공동참여사)	1.5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방법	계	25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5	정성적 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8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2	정성적 평가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계	10		
	작업계획	5	정성적 평가	
	직원투입계획(집중참여도)	5	정량적 평가	
전문가 역량	계	55(55)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25(25)	정량적 평가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20(15)	정성적 평가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0(10)	정성적 평가
인터뷰 평가		-(5)	정성적 평가	
사회적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2	정량적 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2	정량적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성성 저해우려사항	최대-10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위반		정량적 평가	

※ 평가기준 중 ( ) 점수는 인터뷰 평가 시 배점

### Ⅲ.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2단계 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통합 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아래 2호	100	2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 2. 입찰가격 평가점수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3 \times \left( \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IV.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공통사항	<p>① 당해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p> <p>②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 발주청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분야에 한함), 기술자문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p> <p>③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다. - 국외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p> <p>④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철도분야 :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광역철도 - 기타분야 · 발주청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로서 설계속도 80km/h 이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토목분야</p> <p>⑤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의 종류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철도분야 : 1.0, - 기타분야 : 0.6</p> <p>⑥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의 단계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 1.0 - 건설사업관리(설계분야에 한함), 기술자문 : 0.6</p> <p>⑦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전문가 자격계수는 다음과 같다. - 당해용역 최소자격조건 충족시 : 1.0 - 당해용역 최소자격조건 미충족시 : 0.0</p> <p>⑧ 핵심전문가의 최소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사업책임기술인 (철도)</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분야별책임기술인 (철도,토질,구조,교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분야별참여기술인 (철도,토질,구조,교통)</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등 급</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특급(해당 전문분야)</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고급(해당 전문분야)</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중급(해당 전문분야)</td> </tr> </tbody> </table> <p>⑨ 평가항목별 작성내용은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그림 및 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자료로 최소화하여야 한다.</p> <p>⑩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한다.</p> <p>⑪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 소속직원이 평가한다.</p>	구 분	사업책임기술인 (철도)	분야별책임기술인 (철도,토질,구조,교통)	분야별참여기술인 (철도,토질,구조,교통)	등 급	특급(해당 전문분야)	고급(해당 전문분야)	중급(해당 전문분야)
구 분	사업책임기술인 (철도)	분야별책임기술인 (철도,토질,구조,교통)	분야별참여기술인 (철도,토질,구조,교통)						
등 급	특급(해당 전문분야)	고급(해당 전문분야)	중급(해당 전문분야)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20점)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점, 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li> <li>○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성과의 품질확보 및 향상방안</li> <li>- 유고시 성공적 용역성과 납품 보증방안</li> <li>-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 시스템 (ISO 등 관련 인증분야 있는 경우 포함) 등</li> </ul> </li> </ul>																				
	2. 사업관리 운영체계 (5점, 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li> <li>○ 사업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공동도급시 참여사별 역할, 업무조정 및 관리방안)</li> <li>- 당해용역과 관련한 핵심전문기술자(관련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사 또는 박사) 보유 현황 및 보유기술자의 강점, 회사 지원시스템 등</li> </ul> </li> </ul>																				
	3. 신용도(10점, 정량적 평가)																					
	3-1.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li> <li>○ 신용평가등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계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적용계수</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적용계수</td> <td>1.0</td> <td>0.8</td> <td>0.6</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가지를 제출</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li> <li>-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li> <li>- 당해용역에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li> </ul>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적용계수	1.0	0.8	0.6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적용계수	1.0	0.8	0.6	0																		

평가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20점)	3. 신용도(10점, 정량적 평가)														
	3-2. 업무정지, 부실별점 (7점, 정량적 평가)	<p>○ 평가점수(점) = 배점 - 감점(최대7점)</p> <p><b>【부실별점】</b></p> <p>○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감점하며, 점수계산방법은 모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별점을 합산한 후 5점 이내에서 감점 처리</p> <table border="1"> <tr> <td>누계 평균 별점</td> <td>1점 이상 2점 미만</td> <td>2점 이상 5점 미만</td> <td>5점 이상 10점 미만</td> <td>10점 이상 15점 미만</td> <td>15점 이상 20점 미만</td> <td>20점 이상</td> </tr> <tr> <td>감점 점수</td> <td>0.2점</td> <td>0.5점</td> <td>1점</td> <td>2점</td> <td>3점</td> <td>5점</td> </tr> </table> <p>○ 당해용역에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구성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적용</p> <p>○ 부실별점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별점을 합산하여 각각 감점한다.</p> <p><b>【업무정지】</b></p> <p>○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누계 평균 별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점수	0.2점	0.5점	1점	2점	3점
누계 평균 별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점수	0.2점	0.5점	1점	2점	3점	5점									
기술역량 (50점)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15점, 정성적 평가)	<p>○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p> <p>○ 과업과 관련한 보유 기술력 및 개발노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개발실적</li> <li>-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활용실적</li> <li>- 기타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실적 등</li> </ul>													

평가항목		평가방법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5점, 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li> <li>○ 당해과업과 관련한 유사경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의 문제 해결사례에 근거한 당해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li> </ul> </li> </ul>															
	6. 용역평가결과 심사 (10점,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A)</li> <li>○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업체가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3년치 산출평균)로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분야는 “도로 및 교통시설”로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기준일’은 건설기술용역 평가일로 함</li> </ul> </li> <li>○ 적용계수(A)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상시평가 결과 평가점수</th> </tr> <tr> <th>91.5점 이상</th> <th>90.5이상 ~ 91.5미만</th> <th>90.5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적용계수 (A)</td> <td>1.0</td> <td>0.85</td> <td>0.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항목은 공고일 기준 상시평가 결과를 반영</li> <li>○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류에 한 함</li> <li>*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0.85”로 산정</li> </ul> </li> </ul>				구 분	상시평가 결과 평가점수			91.5점 이상	90.5이상 ~ 91.5미만	90.5미만	적용계수 (A)	1.0	0.85	0.7	
구 분	상시평가 결과 평가점수																
	91.5점 이상	90.5이상 ~ 91.5미만	90.5미만														
적용계수 (A)	1.0	0.85	0.7														
유사실적 (30점)	7. 양적평가 (주관사+공동참여자) (15점,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적용계수</li> <li>○ 최근 5년간 당해용역 특성을 고려한 유사용역 대표실적 양적평가(단, 실적금액 구간별 평가단위건수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횟수 = <math>\sum (\text{참여횟수} \times \text{유사용역 공동도급비율} \times \text{용역 단계별계수} \times \text{용역종류별계수})</math></li> <li>- 적용계수 : 유사용역 수행건수에 따른 적용계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참여횟수</th> <th>10건이상</th> <th>10건미만 8건이상</th> <th>8건미만 6건이상</th> <th>6건미만 4건이상</th> <th>4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적용계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body> </table> </li> <li>- 당해용역에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실적에 업체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고 합산된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li> <li>- 연차계약 용역의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건의 실적으로 적용하되, 기술자문용역은 과업의 성격상 각 연차용역의 준공실적 적용 (용역참여횟수: ‘기 준공된 용역기간 / 총 용역기간’ 건 ≤ 1건)</li> <li>* 기술자문용역의 총 용역기간 불분명시 5년으로 가정함</li> <li>- 일괄, 기술제안,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계약된 경우에는 해당분야 참여횟수를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설계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참여횟수의 80%를 수행실적으로 인정함.</li> </ul> </li> </ul>				참여횟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6
참여횟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평가방법											
		- 해외유사용역의 범위는 발주청에서 시행한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로서 국내 유사용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용역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용역 계약서에 의거 평가											
	<b>8. 실적평가</b> (주관사+공동참여사) (15점, 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li> <li>○ 최근 5년간 당해용역 특성을 고려한 유사용역 대표실적 10건의 실적평가</li> <li>○ 당해용역에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의 지분율 범위 내(±5%)에서 작성건수 배분</li> </ul>											
감 점	<b>9. 계약신뢰도</b> (-5점,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감점</li> </ul>											
	<b>9-1. 평가서 작성위반</b>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점항목</li> <li>- 평가서 페이지 수 초과 : 1페이지당 0.1점</li> <li>- 평가서 규격 위반(페이지 수 관계없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규격(A4) 위반시</th> <th>양면인쇄 위반시</th> <th>좌철 위반시</th> </tr> </thead> <tbody> <tr> <td>감 점</td> <td>0.1점</td> <td>0.1점</td> <td>0.1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라 사용 위반 : 1페이지당 0.1점</li> </ul>	구 분	규격(A4) 위반시	양면인쇄 위반시	좌철 위반시	감 점	0.1점	0.1점	0.1점			
	구 분	규격(A4) 위반시	양면인쇄 위반시	좌철 위반시									
감 점	0.1점	0.1점	0.1점										
<b>9-2.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사항</b>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li> <li>○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li> <li>-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li> </ul> <p>※ 평가관련 비리감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점사유</th> <th>감점</th> <th>감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 <td>0.5</td> <td>당해평가</td> </tr> <tr> <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td> <td>1</td> <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 <td>5</td> <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 </tr> </tbody> </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0.5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1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0.5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1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술보유 (10점)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점수 (1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frac{\text{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text{기술적이행능력 평가배점}}$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사업수행방법 (25점)	2.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5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 등 이해의 정도 -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과업추진방안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前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3.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8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 당해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편성의 적정성 [조직구조, 핵심전문가 및 일반전문가(Non Key Expert)명단] - 전문분야별 팀, 팀리더의 장점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전문분야별 협업추진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 적정성
4.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2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적정성 -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적정성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10점)	5. 작업계획 (5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주요활동과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용역기간 단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 방안의 적정성</li> <li>-시급한 인허가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의 적정성</li> </ul>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li> </ul>																	
	<b>6. 직원투입계획(집중참여도)</b> <b>(5점, 정량적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책임 : 2점</li> <li>○ 분야책임 :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 0.5점</li> <li>- 토질/지질 : 0.5점</li> <li>- 토목구조 : 0.5점</li> <li>- 교통 : 0.5점</li> </ul> </li> <li>○ 분야참여 :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 0.25점</li> <li>- 토질/지질 : 0.25점</li> <li>- 토목구조 : 0.25점</li> <li>- 교통 : 0.25점</li> </ul> </li> </ul>	<p>○ 평가점수(점) = ∑(기술자별 배점 × 적용계수)</p> <p>○ 평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가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li> <li>○ 적용계수 :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총 중복 비율에 따른 적용계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00%이하</th> <th>200%초과 ~250%이하</th> <th>250%초과 ~300%이하</th> <th>300%초과 ~350%이하</th> <th>350%초과 ~40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적용계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비율=∑[핵심전문가별 각 용역 건의 중복(잔여) 용역기간] / 해당 용역 기간 × 100</li> <li>- 중복(잔여) 용역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 제외</li> <li>-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과 3개월 이상 용역중지 확정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li> <li>-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은 중복대상에서 제외</li> <li>-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자 0점 처리</li> <li>-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li> </ul>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300%이하	300%초과 ~350%이하	350%초과 ~400%이하	적용계수	1.0	0.9	0.8	0.7	0.6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300%이하	300%초과 ~350%이하	350%초과 ~400%이하														
적용계수	1.0	0.9	0.8	0.7	0.6														
<b>전문가 역량</b> <b>(55점)</b>	<b>7. 핵심전문가 유사실적</b>	<p>&lt;공통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당해용역 특성을 고려한 핵심전문가의 해당 전문분야 유사용역 대표실적의 양적, 질적평가</li> <li>○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제출건수는 사업책임 6건, 분야책임별각4건, 분야참여별 각2건으로 제한(단, 단계별, 종류별 평가단위건수 계수 미적용)</li> <li>○ 발주청·감독기관의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다만,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li> <li>○ 핵심전문가 유사용역의 실적인정 범위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낙찰업체의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li> </ul> </li> </ul>																	



평가항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li> <li>- 해외유사용역의 범위는 발주청에서 시행한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로서 국내 유사용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용역</li> <li>·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및 해당 용역 계약서에 의거 평가</li> </ul>																																																								
<p><b>7. 핵심전문가 유사실적</b></p> <p><b>7-1.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 평가 (25점, 정량적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용역 참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책임 : 10점</li> <li>- 분야책임 : 10점</li> <li>· 철도 : 4점</li> <li>· 토질/지질 : 2점</li> <li>· 토목구조 : 2점</li> <li>· 교통 : 2점</li> </ul> </li> <li>- 분야참여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 2점</li> <li>· 토질/지질 : 1점</li> <li>· 토목구조 : 1점</li> <li>· 교통 : 1점</li> </ul> </li> </ul>	<p><b>&lt;공통사항&gt; “상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기술자별 배점×적용계수)</li> <li>○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의 양적 평가</li> <li>○ 수행실적(건)=∑(수행건수 × 유사용역 종류별 적용계수 × 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 × 핵심전문가 자격계수)</li> <li>- 수행건수(건) = <math>\frac{\text{참여기간(개월)}}{\text{총 계약기간(개월)}}</math></li> <li>- 수행건수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이 인정하는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한하여 수행건수로 인정하며, 다음 평가단위건수로 환산하여 인정(단,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함)</li> <li>※가타분야 실적평가: 가타분야 건별 전체금액(0.6배당분야 금액으로 환산 후, 금액구간별 평가단위건수 적용함)</li> <li>·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술조사, 기본계획</li> </ul> <table border="1" data-bbox="726 1294 1441 1384"> <tr> <td>용역실적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7억원 이상</td> <td>7억원 미만 ~4억원 이상</td> <td>4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평가단위건수</td> <td>1.4</td> <td>1.2</td> <td>1.0</td> <td>0.8</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분야), 기술자문</li> </ul> <table border="1" data-bbox="726 1451 1441 1541"> <tr> <td>용역실적금액</td> <td>20억원이상</td> <td>20억원미만 ~15억원이상</td> <td>15억원미만 ~10억원이상</td> <td>10억원미만 ~5억원이상</td> </tr> <tr> <td>평가단위건수</td> <td>1.2</td> <td>1.0</td> <td>0.8</td> <td>0.6</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책임 기술자</li> </ul> <table border="1" data-bbox="746 1597 1441 1697"> <tr> <td>수행 실적(건)</td> <td>10건이상</td> <td>9건이상 10건미만</td> <td>8건이상 9건미만</td> <td>7건이상 8건미만</td> <td>7건미만</td> </tr> <tr> <td>적용계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5</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책임 기술자</li> </ul> <table border="1" data-bbox="738 1753 1441 1865"> <tr> <td>수행 실적(건)</td> <td>10건이상</td> <td>9건이상 10건미만</td> <td>8건이상 9건미만</td> <td>7건이상 8건미만</td> <td>7건미만</td> </tr> <tr> <td>적용계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5</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참여기술인</li> </ul> <table border="1" data-bbox="738 1921 1441 2022"> <tr> <td>수행 실적(건)</td> <td>5건이상</td> <td>4건이상 5건미만</td> <td>3건이상 4건미만</td> <td>2건이상 3건미만</td> <td>2건미만</td> </tr> <tr> <td>적용계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5</td> </tr> </table>	용역실적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가단위건수	1.4	1.2	1.0	0.8	용역실적금액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평가단위건수	1.2	1.0	0.8	0.6	수행 실적(건)	10건이상	9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8건미만	7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5	수행 실적(건)	10건이상	9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8건미만	7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5	수행 실적(건)	5건이상	4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3건미만	2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5
용역실적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가단위건수	1.4	1.2	1.0	0.8																																																					
용역실적금액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평가단위건수	1.2	1.0	0.8	0.6																																																					
수행 실적(건)	10건이상	9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8건미만	7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5																																																				
수행 실적(건)	10건이상	9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8건미만	7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5																																																				
수행 실적(건)	5건이상	4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3건미만	2건미만																																																				
적용계수	1.0	0.9	0.8	0.7	0.5																																																				

평가항목		평가방법								
	<b>7-2.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b> * 인터뷰 평가 시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li> <li>○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질적평가</li> </ul> </li> <li>○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제안 내용(책임 및 참여기술인)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책임기술인)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li> </ul> </li> </ul>								
	<b>7-3.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0점, 정성적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li> <li>○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li> <li>-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및 당해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li> <li>* 한계상태설계법, BIM, 시방서 제·개정 등</li> </ul> </li> <li>○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li> </ul> </li> </ul>								
	<b>7-4. 인터뷰 평가 (0점)</b> * 인터뷰 평가 시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전문가(사업·분야책임)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li> </ul> </li> </ul>								
<b>사회적 책임</b>	<b>8. 인력고용 가점 (최대+2점, 정량적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신규 고용율</th> <th>1%이상</th> <th>2%이상</th> <th>3%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가 점</td> <td>1.0</td> <td>1.5</td> <td>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자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li> </ul>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1.0	1.5	2.0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1.0	1.5	2.0							

평가항목		평가방법						
	<p><b>9. 공정거래 감점</b> (최대-2점, 정량적 평가)</p>	<p>○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행위유형</th> <th>조치정도</th> </tr> </thead> <tbody> <tr> <td>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 19조)</td> <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 (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 (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 </tr> <tr> <td>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td> <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 </tr> </tbody> </table> <p>- 공정거래관련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p> <p>-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함</p> <p>○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p> <p>-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p> <p>-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p> <p>-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p> <p>○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p> <p>○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도급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p>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 19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 (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 (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 19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 (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 (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평가관련 신뢰도	<p>(-10점, 정량적 평가)</p> <p><b>10-1. 평가의 공정성·적정성</b> <b>저해 우려사항</b> (정량적 평가)</p>	<p>○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p> <p>○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p> <p>○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p> <p>-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p>						

평가항목		평가방법			
		※ 평가관련 비리감점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0.5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1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10-2. 제안서 작성위반 (정량적 평가)	○ 감점항목 - 제안서 페이지 수 초과 : 1페이지당 0.1점 - 제안서 규격 위반(페이지 수 관계없음)			
		구 분	규격(A4) 위반시	양면인쇄 위반시	좌절 위반시
		감 점	0.1점	0.1점	0.1점
		- 칼라 사용 위반 : 1페이지당 0.1점			

## V.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 1. 총 칙

#### 가. 작성요령

1) 규격 : A4(가로 210mm x 세로 297mm)

① 표지 : 백색아트지

② 본문 : 무광택 백상지

③ 간지 : 동일한 단색의 칼라용지

\* 평가서 본문작성 시 여백부 기준은 편철쪽 여백 20mm, 미편철쪽 여백 20mm, 위여백 20mm, 아래여백 20mm로 한다.

\* 평가서 작성시 바탕면과 상, 하, 좌, 우 여백부의 치장을 금한다.

2) 표지문안 : [별지 #1호 서식] 참조

3) 분량 (표지, 간지, 목차, 양면인쇄에 따른 내용없는 페이지, 용역참여신청서, 참여업체현황, 핵심전문가참여현황 미포함)

-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기술제안서 : 총 70쪽 이내

구분	평가항목		최소 분량	제한 분량
합 계			62쪽	70쪽 *A3 1매는 A4 2쪽으로 계산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소 계		12쪽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1쪽	
		과업수행 관리체계	1쪽	
		신용도	1쪽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2쪽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쪽	
		용역평가결과 심사	1쪽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2쪽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2쪽	
	소 계			
종합기술 제안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3쪽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6쪽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2쪽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3쪽	
		직원투입계획	1쪽	
	전문가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유사실적 양적평가	4쪽
			유사실적 질적평가	28쪽
			업무수행의 창의성	2쪽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1쪽
공정거래				

\*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서 정량적 평가 사전심사 결과를 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쇄 및 제본 : 양면 흑백인쇄(간지삽입 평가항목별 마지막 페이지의 경우는 단면인쇄 가능), 좌철

5) 글씨체 및 크기

구 분	권장 글씨체	글씨 권장 크기
큰 제목		13~16Point(진하게)
내 용	고딕체류 또는 명조체류	중제목 11~13Point(진하게)
		소제목 11~13Point(진하게)
		내 용 9~11Point(보 통)
※ 표 등 삽도안을 삽입할 경우 삽입글씨 등은 예외로 함.		

#### 나. 제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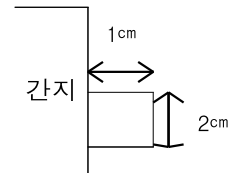
- 1) 제출기한 : 공고내용 참조
- 2) 제출부수 :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증빙서류는 별권 2부)  
\* 제안서, 업무중복도 조회자료는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추가 제출
- 3) 참여업체는 참가등록 시 대리인은 업체대표의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 다. 유의사항

- 1) 제안서는 서술형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당해 제안내용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진, 참고문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2) 제출기한(제출장소 도착기준) 내 도착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3) 신청서의 작성은 본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작성분량 초과 등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4)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서는 통합본으로 작성한다.
- 6)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한다.
- 7)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제안서 작성으로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안서 평가시 참고자료의 형태로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8) 제안서는 우리 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참여업체의

소속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9)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우리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열람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 10) 상기 9)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한 자료는 당해 제안서 작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용도로 활용시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제재 조치할 수 있다.
- 11)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 등 평가를 위해 당해 입찰에 참여하는 상대 업체와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평가위원회에 한해 제공될 수 있다.
- 1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우리 부 소유로 한다.
- 13) 제안서에 포함되는 신기술(건설신기술 등)과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재료, 공법은 설계반영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공법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시 제안을 한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 14) 제출증빙서류는 별권으로 본 작성지침에서 요구한 증빙 서류를 묶어 총 2부 제출하며, 각 항목에 대하여 간지에 옆의 그림과 같이 색인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발표 및 인터뷰

- 1)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을 비롯한 주요분야(“평가기준”에 제시) 책임기술인은 제안서 인터뷰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2)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답변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하며, 답변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 3) 발표자는 제안서만을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PPT)는 작성하지 않으며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 자료로 발표한다.
- 4) 제안서 발표시간 등 발표 및 인터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 공지토록 한다.

\* 인터뷰 시행여부는 입찰공고문에 기재

## 2. 세부 작성지침

###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가) 용역성과의 품질확보 및 향상방안

- ① 세부추진단계별 성과의 품질확보 방안을 기술한다.
- ② 품질확보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나) 유고시 성공적 용역성과 납품 보증방안

- ① 관원 및 민원 의견수렴 불충분에 따른 민원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측량, 지반조사 미흡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시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③ 공동도급 참여시 공동도급사(분담이행사 포함) 부도,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 다)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

- ①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내부 검증, 예방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회사가 보유중인 품질보증시스템(ISO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③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술한다.

#### 2) 사업관리 운영체계

##### 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 ① 당해용역의 공정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운영방안을 기술한다.
- ② 발주청, 지반조사업체, 측량업체와의 협업체계 운영방안을 기술한다.
- ③ 공동도급 참여시 참여사별 역할, 업무조정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나) 핵심기술자 보유 현황 및 보유기술자의 강점, 회사 지원시스템

- ① 당해용역과 관련한 회사 내 핵심기술자 보유현황과 강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당해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자의 교체, 추가 등 인력 운영계획 변경시 회사의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③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술한다.

#### 3) 신용도

##### 가) 신용평가등급

- ①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한 가지를 기입한다.



- ②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평가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실별점

- ①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부실별점을 기입한다.
- ② 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하며,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별점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정지

- ①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 ② 업체, 기술자의 업무정지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에 대한 전문성

가)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개발실적

- ①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 개발실적을 총5건 이내로 기술한다.
- ②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지분을  $\pm 5\%$  범위내에서 작성 건수를 배분하여 작성하며, 평가위원이 인정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로 1건 이상씩 기술한다.
- ③ 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④ 특허권은 특허법 관련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관련조항에 의거 실용신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실용신안을 先 등록 하였을 경우 등록유지결정(등록원부 상에 기술평가 확정등록)을 받은 건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⑥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20년 이내, 신기술 및 기타기술은 보호기간 이내인 실적을 평가한다.
- ⑦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 외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⑧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하다.
- ⑨ 보유기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빙서류 제출시 별도 첨부하지 않으며, 사전 준비 후 당해용역 평가자의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활용실적

- ①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 활용실적을 총5건 이내로 기술한다.
- ②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지분을  $\pm 5\%$  범위내에서 작성 건수를 배분하여 작성하며, 평가위원이 인정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로 1건 이상씩 기술한다.
- ③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④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⑤ 활용실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빙서류 제출시 별도 첨부하지 않으며, 사전 준비 후 당해용역 평가자의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실적 등

- ①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을 총5건 이내로 기술한다.
  - 특별제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적
  - 과업과 관련한 시방서, 설계기준서 제·개정 참여 실적 등
- ②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지분을  $\pm 5\%$  범위내에서 작성 건수를 배분하여 작성하며, 평가위원이 인정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로 1건 이상씩 기술한다.

##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가) 당해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 ①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지정분야와 관련된 실적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의 해결사례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작성내용은 가급적 계량화시켜 기술한다.
- ③ 일반적이거나, 상투적인 서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최대한 집약하여 기술한다.
- ④ 참고법령, 사례, 문헌, 보고서 등은 그 자료를 평가자가 직접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기한다.

### 나)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① 당해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은 유사 실적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 ② 작성내용은 가급적 계량화시켜 기술한다.
- ③ 일반적이거나, 상투적인 서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최대한 집약하여 기술한다.
- ④ 참고법령, 사례, 문헌, 보고서 등은 그 자료를 평가자가 직접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기한다.

## 6) 용역평가 결과

### 가)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업체가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 기술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3년치 산출평균)로 절대평가한다.

### 나) 세부분야는 “도로 및 교통시설”로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기준일’은 건설기술용역 평가일로 한다.

### 다)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류에 한한다.

### 라)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0.85”로 산정한다.

## 7) 유사실적 양적 평가

### 가) 최근 5년간 당해용역 특성을 고려한 유사용역 대표실적 양적평가

- ①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을 기입한다.
- ②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구성원별로 각각 기입한다.
- ③ 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용역실적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한다.
- ④ 대안입찰,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부문 실적은 발주청에 제출한 업무분담 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계약서 및 실적금액 확인이

가능토록 발주청에서 발행한 객관적 증빙자료[총공사비, 해당분야(철도, 교통, 구조, 토질 및 기초, 터널 등) 공사비, 설계비가 기재된 공문 또는 확인서 등] 사본을 첨부한다.

단, 설계보상대상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적금액 및 참여회수의 80%를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당해 발주기관에서 설계보상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⑤ 철도건설 이외의 사업은 해당용역이 유사용역임을 입증하는 서류사본 등을 첨부한다.
- ⑥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용역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⑦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⑧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계용역(단,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원도급 회사의 증빙서류는 불인정)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건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8) 유사실적 질적 평가

가) 최근 5년간 당해용역 특성을 고려한 유사용역 대표실적 질적평가

- ① 유사실적 양적 평가에서 제시된 실적으로 기술한다.
- ② 당해용역에 공동이행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지분을  $\pm 5\%$  범위내에서 작성 건수를 배분하여 작성하며, 평가위원이 인정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로 1건 이상씩 기술한다.
- ③ 수행실적은 당해 용역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위주로 유리한 실적순으로 기술한다.

#### 9)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가)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 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 소속직원 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10) 비리관련 감점

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비리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 평가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 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에서 비리감점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2)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가)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 등 이해의 정도

- ① 당해용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당해용역 과업대상 지구의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 지형적 특성 등을 통해 설계특성(주안점, 유의사항 등)을 기술한다.

나)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설계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① 당해용역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세부 설계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전문분야는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분야로써 작성자의 판단 하에 추가, 제외할 수 있다.
- ③ 모든 작성자료는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 타당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팀만이 보유한 산출근거 자료는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다) 전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

- ① 예상민·관원에 대한 그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 ② 관련계획 변경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 ③ 전단계사업의 전문분야별 세부설계내용(선형, 토공, 교량, 터널, 배수, 부대 시설 등)을 검토하고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④ 모든 작성자료는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 타당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팀만이 보유한 산출근거 자료는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3)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가) 당해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 ①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별 팀 구성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설계용역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인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당해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편성의 적정성

- ①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핵심전문가 투입계획과 일반전문가(Non Key Expert) 명단 및 자격사항 등을 작성한다.
- ② 당해용역과 같이 공고되는 용역에 일반전문가의 업무중복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핵심전문가는 당해용역과 같이 공고되는 용역에 업무중복을 불허한다.

다) 전문분야별 팀, 팀리더의 장점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① 전문분야별 구성원의 동일팀 수행 경험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전문분야별 팀, 팀리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장점을 활용한 용역수행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전문분야별 협업추진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 적정성

#### 4)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가)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적정성

- ① 용역금액, 용역기간, 제공시설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전문분야 외에 필요한 특수/전문분야와 해당분야 전문가 활용방안을 기술한다.
- ③ 기타 최종 결과물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적정성

- ① 핵심전문가 인력관리계획 및 설계용역 내실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기타 효과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5) 작업계획

가)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 ① 당해 용역의 세부 설계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구체적 일정을 기술한다.
- ② 각 세부 설계단계별 업무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③ 각 업무별 소요기간을 바차트로 표시한다.

나) 설계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 조정방안

- ① 설계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시급한 인허가 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

- ① 시급한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시 적기 인허가 추진을 위한 작업계획 조정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②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6) 직원투입계획

가) 당해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가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

- ① 핵심전문가가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용역 사업에 대하여 명기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용역기간이 표기된 계약서, 유사용역을 입증하는 증빙가능 서류사본 등)

## 7)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 가)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 ① 최근 10년간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수행실적을 사업책임은 6건 이내, 분야별 책임은 각각 4건, 분야별 참여는 각각 2건 이내로 기입한다.
- ② 최소자격 기준 및 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용역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해당부분 발취), 학위증 등 서류를 첨부한다.
- ③ 용역참여 실적사항 등이 경력증명서에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격증 등) 사본을 첨부한다.

### 나)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 ①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에서 제시된 실적의 상세내용을 기술한다.
- ② 수행실적은 당해 용역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위주로 유리한 실적순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8)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 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 ①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를 전문분야별 총 3건 이내로 기술한다.
- ② 설계·공사·공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예측하고 해결한 사례를 기술한다.
- ③ 특별제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적을 기술한다.
- ④ 일반적이거나, 상투적인 서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최대한 집약하여 기술한다.

### 나)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및 당해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 ①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에 근거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을 전문분야별 총 3건 이내로 기술한다.
- ② 최신 설계기법 수행실적을 기술한다.
- ③ 과업과 관련한 시방서, 설계기준서 제·개정 참여 실적 등
- ④ 일반적이거나, 상투적인 서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최대한 집약하여 기술한다.

9)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가점

- 가)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가점기준 및 배점 등은 입찰참가의향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 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10) 공정거래 감점

- 가) 공정거래 감점기준 및 배점 등은 입찰참가의향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 나)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 ② 입찰참가자가 ①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 ③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①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11)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 가)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 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 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 소속직원이 평가한다.

12) 비리관련 감점

- 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비리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 평가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 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 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에서 비리감점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국토교통부장관

제 목 :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아래의 용역에 대한 평가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용역명 :

붙임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기술제안서 15부(원본 1부, 부분 14부)

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법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F A X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용역참여신청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 참 여 업 체 현 황

공동도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공동도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참여업체현황은 본 평가서에 포함(용역참여신청서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 핵심전문가 참여현황

분야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생년월일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사업 책임기술인 (철도분야)				1900.00.00		
철도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주의사항

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함
2.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3. 핵심전문가 참여현황은 본 평가서에 포함(참여업체현황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 기술 제안서

○○~○○ 철도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23. .

참여사	A사	B사	C사	대표사
참여비율(%)				

용역회사명  
(공동 참여시 용역 참여사 모두 표기)

# 목 차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00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	00
제3절 신용도 .....	00
제4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	00
제5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00
제6절 용역평가결과 심사 .....	00
제7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	00
제8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	00
제9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00
제10절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	00
제11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	00
제12절 작업계획 .....	00
제13절 직원투입계획 .....	00
제14절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	00
제15절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	00
제16절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	00
제17절 인력고용 .....	00
제18절 공정거래 .....	00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

#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적 평가]

1.1 용역성과의 품질확보 및 향상방안

1.2 유고시 성공적 용역성과 납품 보증방안

1.3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

##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1.1 용역성과의 품질확보 및 향상방안

### 1.2 유고시 성공적 용역성과 납품 보증방안

### 1.3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

##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적 평가]

2.1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2.2 핵심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및 보유기술자의 강점, 회사 지원시스템



##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 2.1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 2.2 핵심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및 보유기술자의 강점, 회사 지원시스템

## 제3절 신용도

[정량적 평가]

3.1 재정상태 건실도

3.2 업무정지, 부실벌점

### 제3절 신용도

#### 3.1 재정상태 건실도

업 체 명	지분율(%) (A)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적용계수 (B)	점수 (A×B)	비고
계					00	
	00		BB	0.0	00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 3.2 업무정지, 부실벌점

업 체 명	지분율(%) (A)	기간/누계평균벌점 (B)	감점 (A×B)	비고
업무정지			00	
		0월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부실벌점			00	
		0점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 제4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성적 평가]

4.1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의 개발실적

4.2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활용실적

4.3 기타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실적

## 제4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 4.1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의 개발실적

업체명	지정(등록)일	지정(등록)건명	내 용	지정(등록)번호	비고
					신기술 특허

### 4.2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활용실적

업체명	지정(등록)일/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건명	내 용	활용공사명	활용금액 (억원)	비고
						특허 신기술

### 4.3 기타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실적

업체명	수행과업명	수행시기	내 용	발주청 (감독자 / 연락처)	비고
				000기관 (000/ 02-000-000 0)	

## 제5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적 평가]

- 5.1 당해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에 근거한 당해용역의 핵심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5.2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당해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제5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5.1 당해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에 근거한 당해용역의 핵심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5.2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당해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 제6절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적 평가]

### 6.1 상시평가 결과

## 제6절 용역평가결과 심사

### 6.1 상시평가 결과

업 체 명	지분율(%)	상시평가 결과 평가점수 (의향서 평가점수로 환산하여 기입)	비고
		해 당 없 음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 **제7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정량적 평가]

### **7.1 유사용역 참여실적 (최근 5년간 / 업체별)**

## 제7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 7.1 유사용역 참여실적 (최근5년간 / 업체별)

구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I	공동수급 참여회사 II	공동수급 참여회사 III	합계
회사명					
금차용역참여지분율	%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환산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단계		용역종류		금액	발주청	지분율 (C)	건수 (A× B× C)	비고
			단계	계수 (A)	종류	계수 (B)					
계	0000회사										
1-1		과업내용 (00.00.00~ 00.00.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1-2		과업내용 (00.00.00~ 00.00.00)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1-3		과업내용 (00.00.00~ 00.00.00)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1-4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회사										
2-1											
2-2											
2-3											

## **제8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정성적 평가]

### **8.1 수행한 유사용역 대표실적의 과업내용 (최근 5년간)**

**제8절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8.1 수행한 유사용역 대표실적의 과업내용 (최근 5년간)**

구분	과업내용 / 주요 실적	발주청 (감독자 / 연락처)
1-1		
2-1		
3-3		

## **제9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적 평가]

**9.1 당해용역 사업노선의 특성**

**9.2 당해용역의 사업노선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설계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9.3 전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

## 제9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9.1 당해용역 사업노선의 특성



## 9.2 당해용역의 사업노선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설계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9.3 전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

## **제10절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정성적 평가]

**10.1 당해용역 수행조직의 운영방안**

**10.2.1 당해용역의 핵심전문가 투입계획**

**10.2.2 일반전문가 명단 및 자격사항**

**10.3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적정성**

**10.4 전문분야별 협업추진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제10절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 10.1 당해용역 수행조직의 운영방안

### 10.2.1 당해용역의 핵심전문가 투입계획

구분	성명	직책	주요업무별 핵심전문가 투입개월 수 *5. 작업계획의 주요업무 리스트 연계							총개월 수
			D-1	D-2	D-3	D-4	D-5	D-7	...	
핵심전문가(KEY EXPERTS)										
K-1	홍길동	사업책임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K-2										
K-3										
K-4										
K-5										
K-6										
K-7										
K-8										
K-9										
K-10										
K-11										





### 10.3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적정성



#### 10.4 전문분야별 협업추진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제11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적 평가]

**11.1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11.2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 제11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 11.1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 11.2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 제12절 작업계획

[정성적 평가]

12.1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

12.2 설계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의 조정방안

12.3 시급한 인허가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

## 제12절 작업계획

### 12.1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

(예 시)

주요업무(Deliverable)		일정계획(기본계획 00개월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D-1.		■														
D-2.		■	■													
D-3.			■	■	■	■	■									
D-4.						■	■	■	■	■	■	■				
D-5							■	■	■	■	■	■	■	■	■	
D-6.			■	■	■	■	■	■								
D-7						■	■	■	■	■	■					
...	...						■	■	■	■	■	■	■	■	■	

## 12.2 설계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의 조정방안

### 12.3 시급한 인허가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



## **제13절 직원투입계획**

**[정량적 평가]**

### **13.1 당해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의 타 유사용역 참여현황**

### 제13절 직원투입계획

#### 13.1 당해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의 타 유사용역 참여현황

구분	계	사업 책임	분야 책임 (철도)	분야 책임 (토질)	분야 책임 (구조)	분야 책임 (교통)	분야 참여 (철도)	분야 참여 (토질)	분야 참여 (구조)	분야 참여 (교통)
중첩도		00%								
적용계수		0								
점수		0								

참여기술인		용역명	용역 종류	용역기간					중첩도	비고
담당 분야	성 명			착수일	준공 예정일	총 용역 일수	용역 수행 일수	잔여 일수		
계								100	00%	
사책								50		(증빙 서류 page 기재)
사책								5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100		
								50		(증빙 서류 page 기재)
								5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100		
								50		(증빙 서류 page 기재)
								50		(증빙 서류 page 기재)

\* 용역수행일수 및 잔여일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기입한다.

# 제14절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정량적 평가]

## 14.1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 제14절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 6-1.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참여실적)

구분	계	사업 책임	분야 책임 (철도)	분야 책임 (토질)	분야 책임 (구조)	분야 책임 (교통)	분야 참여 (철도)	분야 참여 (토질)	분야 참여 (구조)	분야 참여 (교통)
건수		13건								
적용계수		0.9								
점수		9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사업 책임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철도 책임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교통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토질/ 지질 책임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토목 구조 책임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 )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철도 참여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 )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교통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 )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토질/ 지질 참여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 )

분야	자 격	용역명	용역단계		용역종류		용역 기간 (개월)	참여 기간 (개월)	수행 건수	발주청	건수	비고
			단계	계수	종류	계수						
토목 구조 참여	0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계								00	
		실시 설계	1.0	철도	1.0	00.00.00 00.00.00 (00개월)	00.00.00 00.00.00 (00개월)				00	(증빙 서류 page 기재)
		기본 계획	1.0	기타	0.6							(증빙 서류 page 기재)
		설계 감리	0.6	철도	1.0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재)
												(증빙 서류 page 기 )



# 제15절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정성적 평가]

## 15.1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 제15절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 15-1.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질적평가

#### 1. 사업책임기술인

###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2. 철도분야 책임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3.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4.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5.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6. 철도분야 참여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7. 교통분야 참여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8.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9. 토목구조분야 참여기술인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전문가 성명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0000.00 / 00학교 00과 / 졸업(00)

근무경력

기간	근무처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00.00~00.00	00회사 / 직책(직위)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작업계획에 명시된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 제출실적(사책 6건, 각 분책별 4건, 각 분참별 2건)의 상세개요

\* 상기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우리 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자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 제16절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정성적 평가]

- 16.1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 16.2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에 근거한 당해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 제16절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 16-1.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분야	수행과업명	수행시기	문제해결사례/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발주청 (감독원/연락처)
사업 책임				
철도				
교통				
토질/ 지질				
토목 구조				

**16.2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에 근거한 당해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  
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분야	수행과업명	수행시기	수행경험 / 적용방안	발주청 (감독원/연락처)
사업 책임				
철도				
교통				
토질/ 지질				
토목 구조				

## **제17절 인력고용 가점 및 제18절 공정거래 감점**

**17.1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및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최근 1년간)**

**18.1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실 (최근 2년간)**

**제17절 인력고용 가점**

**17.1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및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최근 1년간)**

회사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률(%)	비고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제18절 공정거래 감점**

**18.1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실 (최근 2년간)**

회사명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	행위유형	조치정도	비고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증빙서류 page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및 종합 기술 제안서 증빙서류

○○~○○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23. .

참여사	A사	B사	C사	대표사
참여비율(%)				

용역회사명  
(공동 참여시 용역 참여사 모두 표기)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

신 용 도

# 개발실적/활용실적

# 유사용역 양적 평가

# 직 원 투 입 계 획

# 용역평가결과 심사

#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공정거래 위반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b>I. 일반적인 사항</b>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b>II. 용역실적의 내용</b>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b>III. 붙임</b>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별지 제4호 서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2) 발주기관	
	(영문)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 부에서 발주한 0000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에 입찰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의 입찰참여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입찰참여와 관련한 당회사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대표이사 인장 사용)

국토교통부장관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정량적 평가 항목 사전평가서								
용역명								
용역사		0000 컨소시엄(주관사 : 0000)						
평가항목		배 점 (A)	평가점수 산정 *배점생략	산출근거		적용점수 (A×B)	비고	
합계		-	-	-	-	33.5 (±2)		
관리역량	신용도	재정상태 건설도	0.3	적용계수	* 예시 BBB, 회사채	* 예시 1.0	* 예시 0.3	(A-B) 적용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0.7	-감점	* 예시 벌점1점	* 예시 -0.2	* 예시 0.5	
기술역량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	-	-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적평가(주관사+공동참여사)		1.5	적용계수	* 예시 10건	* 예시 1.0	* 예시 1.5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직원투입계획(집중참여도)	5	Σ(기술자배점 *적용계수)	소계	* 예시 -	* 예시 -	* 예시 5.0	
				사책	50%	1.0	2.0	
				철도분책	50%	1.0	0.5	
				교통분책	50%	1.0	0.5	
				토질분책	50%	1.0	0.5	
				구조분책	50%	1.0	0.5	
				철도분책	50%	1.0	0.5	
				교통분책	50%	1.0	0.5	
				토질분책	50%	1.0	0.5	
				구조분책	50%	1.0	0.5	
전문가 역량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25	Σ(기술자배점 *적용계수)	소계	* 예시 -	* 예시 -	* 예시 25.0	
				사책	10건	1.0	10	
				철도분책	10건	1.0	4	
				교통분책	10건	1.0	2	
				토질분책	10건	1.0	2	
				구조분책	10건	1.0	2	
				철도분책	5건	1.0	2	
				교통분책	5건	1.0	1	
				토질분책	5건	1.0	1	
				구조분책	5건	1.0	1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신규고용율	3.0%	+2.0	+2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감점	입찰담합 시정명령	-0.2	-0.2	(A-B) 적용

[별지 제7호 서식]

## 기술적 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적 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